
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1.

발 의 자 : 이기현 · 장철민 · 김원이
조계원 · 임미애 · 박정현
박민규 · 한민수 · 전용기
김 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 본부장,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,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 27조제3항 삭제 등).
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단서 중 “제4항·제7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7항을 삭제한다.

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년 초과 근무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이거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 또는 내정된 직위에서 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특임공관장) ① (생 략)	제4조(특임공관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,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, 제23조, 제24조, 제26조제2항 · 제4항 · 제7항, 제27조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26조(당연 퇴직 등) ① ~ ⑥ (생 략)	제26조(당연 퇴직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(이하 “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”라 한다)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	<삭 제>

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. 다만,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.

제27조(정년) ① · ② (생략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(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)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27조(정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